

의안번호	제448호
의결 연월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24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8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발 의 자 : 김성대, 노금식, 최정훈,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으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오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규정취지에 맞게 조례명 변경(안 제명)
 - (현행)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개정)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조례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기능(안

제2조)

- 센터 운영의 위탁 근거,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6조)
-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행정운영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3. 10. . ~ 2023. 10. .(5일간)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 사업
2. 충청북도민의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
3.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협력사업
4.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5.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4조(운영규정)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그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미리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안 제6조, 비용의 지원)

-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256,667천원
-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임대료 187,50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간 256,667천원, 향후 5년간 1,520,53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세 출	256,667	261,514	266,482	271,574	276,793	1,520,530	
센터 운영비	256,667	261,514	266,482	271,574	276,793	1,520,530	
인건비	193,867	198,714	203,682	208,774	213,993	1,019,030	
운영비	21,346	21,346	21,346	21,346	21,346	106,730	
관리비	41,454	41,454	41,454	41,454	41,454	207,270	
전세보증금	-	-	-	-	-	187,500	
재원 조달	256,667	261,514	266,482	271,574	276,793	1,520,530	
의존 재원	보조금	-	-	-	-	-	
자체 재원	도비	256,667	261,514	266,482	271,574	276,793	1,520,530